

 <b>제주발전연구원</b>	<b>보 도 자 료</b> 2009년 9월 8일(화요일)	담당	환경지역계획팀 이성용 책임연구원
		연락	726-6146 010-2883-4845

## 도심 내 방치된 옥상공간 녹화 환경적 · 사회적 효과 크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옥상녹화조성 방안”서 제언

- 도심 내 방치된 옥상공간을 녹화할 경우 환경오염방지, 도시생태계의 복원, 에너지절약, 소음감소 등 다양한 **환경적 효과**가 있음.
- 각각의 건물옥상에 조성되는 수목들은 도시가 내뿜는 높은 온도를 낮출 뿐 아니라, 주변의 오염된 공기와 바람을 물리적 · 화학적으로 여과, 방취하여 대기의 청정도를 높임. 더불어 옥상공간의 수목은 주변의 소음을 저감시키고, 천장기능을 담당하고, 그늘을 형성함으로써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함
- **사회적 효과** 또한 크다. 비효율적으로 황폐하게 비워져 있는 현재의 옥상공간을 푸르름이 가득한 옥상정원으로 계획하게 된다면, 그 공간은 흥분, 기분전환, 휴식, 호기심 등을 통해 사람들을 유입시킴으로써 사람들 간의 만남을 유도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사람들 간의 community를 활성화하여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키게 됨. 옥상녹화는 그 자체로서 건물 외관 향상 및 차폐, 가로경관의 향상, 자연이 있는 새로운 공간의 창출 등 많은 미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서귀포시 중앙로 인근 건물들을 옥상녹화로 조성한다면, 각각의 옥상녹화들은 서로간의 조화를 이루며,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게 됨. 이러한 옥상녹화의 조화에 따른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그리스

산토리니섬처럼 관광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김으로써,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가능할 것임

#### □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 **신축 건물 옥상녹화 의무화** - 공공 및 민간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기준을 설정하여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열섬 현상 완화 및 녹지축과 생태축의 연결을 위해서 의무화를 고려해보아야 할 시점임
  
- **녹화계획서 및 녹화설계지침서의 마련**- 건축시 조성되는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옥상녹화, 벽면녹화, 실내조경, 건축물 주변 환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축물녹화계획'을 작성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서울은 "건축물 옥상녹화시스템 유형결정과 관리메뉴얼"을 작성하여 운용 중에 있고, 인천 등 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옥상녹화 관련된 녹화설계지침서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지속적이며 활발한 보급을 위하여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녹화설계지침서의 마련이 필요함
  
- **옥상화단 및 옥상텃밭의 활용**- 기존 건축물에 조성했던 옥상의 화단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활용 및 재생하여 녹지 공간화하여야 할 것임. 또한 옥상공간을 텃밭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며 옥상텃밭은 생산 및 주민의 활동을 수반하고 생산물을 판매하여 소정의 수입확보가 가능함
  
- **환경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옥상녹화 공간 중에서 공공시설이나 일정규모이상 경우 생태공원화된 곳은 어린이나 유아들의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곳이 많아지면 기존의 공원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선 시범사업 후 도전역 확대**- 본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귀포시 일부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관련 제도와 지침(설계서) 등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도전역 확대도 가능할 것임.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도와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면 도전역 확대는 용이할 것임